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0513호, 2011. 3. 30. 공포·시행)됨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정하는 한편, 혼합음료 중 주로 성인이 마시는 음료임을 제품에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혼합음료는 어린이 기호식품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 규정(안 제12조의2 신설)

- 1)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또는 식품·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산업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3)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식품 관련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주로 성인이 마시는 혼합음료를 어린이 기호식품에서 제외함(안 별표 1 제1호사목).

- 1) 현재 어린이 기호식품에 포함되는 혼합음료에는 숙취 해소 음료, 버섯 음료 등 주로 성인이 마시는 음료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 이에 대하여 불필요한 규제가 수반되는 문제가 있음.
- 2) 혼합음료 중 주로 성인이 마시는 음료임을 제품에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혼합음료를 어린이 기호식품에서 제외함.
- 3) 주로 성인이 마시는 음료에 대한 규제가 합리화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9월 2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대통령령 제23155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법 제17조 진단”을 “법 제17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근로자의 요구에 따른 서면 교부)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1조제2항, 제52조, 제57조, 제58조제2항·제3항, 제59조 또는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
2. 법 제93조에 따른 취업규칙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단체협약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
4. 법령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

부칙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에 관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반드시 교부하되,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서면을 교부할 수 있는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법률 제10319호, 2010. 5. 25. 공포, 2012. 1. 1. 시행)됨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법령에 의하여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조건 서면 교부 의무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9월 22일

국무총리 김항식

국무위원
여성가족부장 김금래

●대통령령 제23156호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